

부산직할시 지부편

다음은 부산직할시 市政과 長期綜合建設計劃을 都市計劃局 建築課長 朴致權氏와 對談 내용이다.

1. 지역사회 개발 촉진 방향.

가) 부산직할시 도시계획

현재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은 1972년도에 결정한 것으로 1986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270만 수용을 기준으로 384.692km²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경제의 급성장과 급변하는 도시화 경향으로 1980년도에 300만 인구를 돌파하고 김해 지역 일부가 편입되므로서 2,000년대의 장기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나) 장기종합계획(안)

- (1) 목표년도 2001년
- (2) 인 구 580만
- (3) 도시계획구역 467.59KM²
- (4) 주요관련 계획 촉진
 - 국토종합 개발 기본 계획 확정
 - 부산항 종합 개발 계획 확정.
 - 부산역 이전계획 확정
 - 경부고속 전철계획 확정
 - 경부선 북부선 계획 확정
 - 낙동강 하구 개발계획 확정

(5) 기타 검토중인 사항

- 인구수용을 위한 위성신도시 건설 계획
- 고속 교통망 건설 계획
- 공해공장 이전 및 용지 활용 계획
- 공업단지 조성 계획
- 도시기반 시설 확충 계획

2.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집단개발 방침

가. 아파트 지구 개발

- (1) 지구지정 : 16개지구 - 865,531 평
- (2) 기 개발 : 8개지구 - 434,486 평
- (3) 개발예정지 : 8개지구 - 431,063 평
(5개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나. 토지구획 정리사업

- (1) 사업완료지구
34개지구 - 12,437,098평
(1개지구 296,674평 시행중)
- (2) 사업시행예정
2개지구 - 423,000 평

다. 재개발 사업

- (1)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결정
 - 대상지 - 도심부 상업지역
 - 면 적 - 40.96km²
- (2) 재개발 구역 결정
부산역전 - 5,236평
봉래구역 - 52,861평

라. 개발방향

- 도시발전에 따른 지역의 기능변화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집단 거점 개발.
- 기존시설과의 관계 검토 - 조화유지
-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유도

3.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시정방침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 및 규칙의 제정 시행으로 행정재량의 범위를 좁히고 직무교육과 지식,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각허가 관청간의 건축규제의 통일을 기하며, 주택건설 촉진법 관계 규정의 개정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허가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 강구와 허가 과정상의 사무처리 방법을 개선, 업무의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에 건축사 대행업무 제도는 명확한 책임한계를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4. 건축심의 대상물 심의 및 절차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시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건축허가 신청전에 별도로 시 본청에 심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처분에 있어서 예비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건축허가에서도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 기타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실제 이전에 건축계획의 개요와 입지에 대하여 허가처분청에 건축가능여부를 문의하는 형식의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건축사 업무와 시행령 전반에 대한 의견

건축사의 업무와 도시행정 특히 건축행정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도시조형 대부분이 건축사에 의하여 계획, 실현되고 있을뿐 아니라 도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책임 또한 막중한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지역을 위주로 행정업무 일부를 건축사에게 위임 대행케 하고 있어 건축사의 업무는 준 공적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대행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전연없는바도 아니며 특히 건축사의 처벌에 대한 기준이 가혹하고 현실적으로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제도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며 언젠가는 주택건축에 대하여 사전 건축허가 없이 준공 후 건축사의 확인 신고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